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87
----------	---------

제출연월일: 2022년 9월 29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강서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를 설치하고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신탁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함 (안 제3조의2 신설)

- 나.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토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 다.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 라. 가맹점 등록 신청 처리 기한 설정(안 제5조제3항)
- 마.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6조~8조, 제10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2022. 9월 중 실시(20일간)
 - 2) 규제심사: 기획예산과(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4) 성별영향평가: 가족정책과(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5)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강서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사용자가 강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강서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 · 판매 · 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 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을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와”를 “판매대행점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대행점 ·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을 “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업종”이란을 “제한업종이나 제한사업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업종”을 “업종이나 제한사업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판매대행점 · 운영대행사의 <u>협약 등</u>)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p>	<p>제3조의2(강서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구청장은 사용자가 강서 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강서사랑상품 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자 등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 · 판매 · 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 라 한다)을 보관 ·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 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 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 별시장으로 한다.</p> <p>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따라 운영대행사에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

--- 판매대행점-----

-----.

③ 판매대행점과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판매대행점-----

-----.

⑤ 판매대행점은 -----

-----.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

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같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신설>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제한업종이나 제한사업체란 -----.

- 1. 2. (현행과 같음)
- 3. -----

업종이나 제한사업체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

-----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
-----.

제7조(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구입시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한다.

제7조(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관 계 법 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

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3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문 본문의 변경 등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성 명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엄철하 (담당자: 행정8급 변영미)
연락처	02-2600-6275